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2026. 1.



# CONTENTS



I

계획의 개요

II

대상지 여건분석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IV

참고자료

V

관련의견 및 조치계획

# I . 계획의 개요

## 1 제안사유

-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내 파고라를 신축하여 상징적 경관 요소로 조성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 및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캠퍼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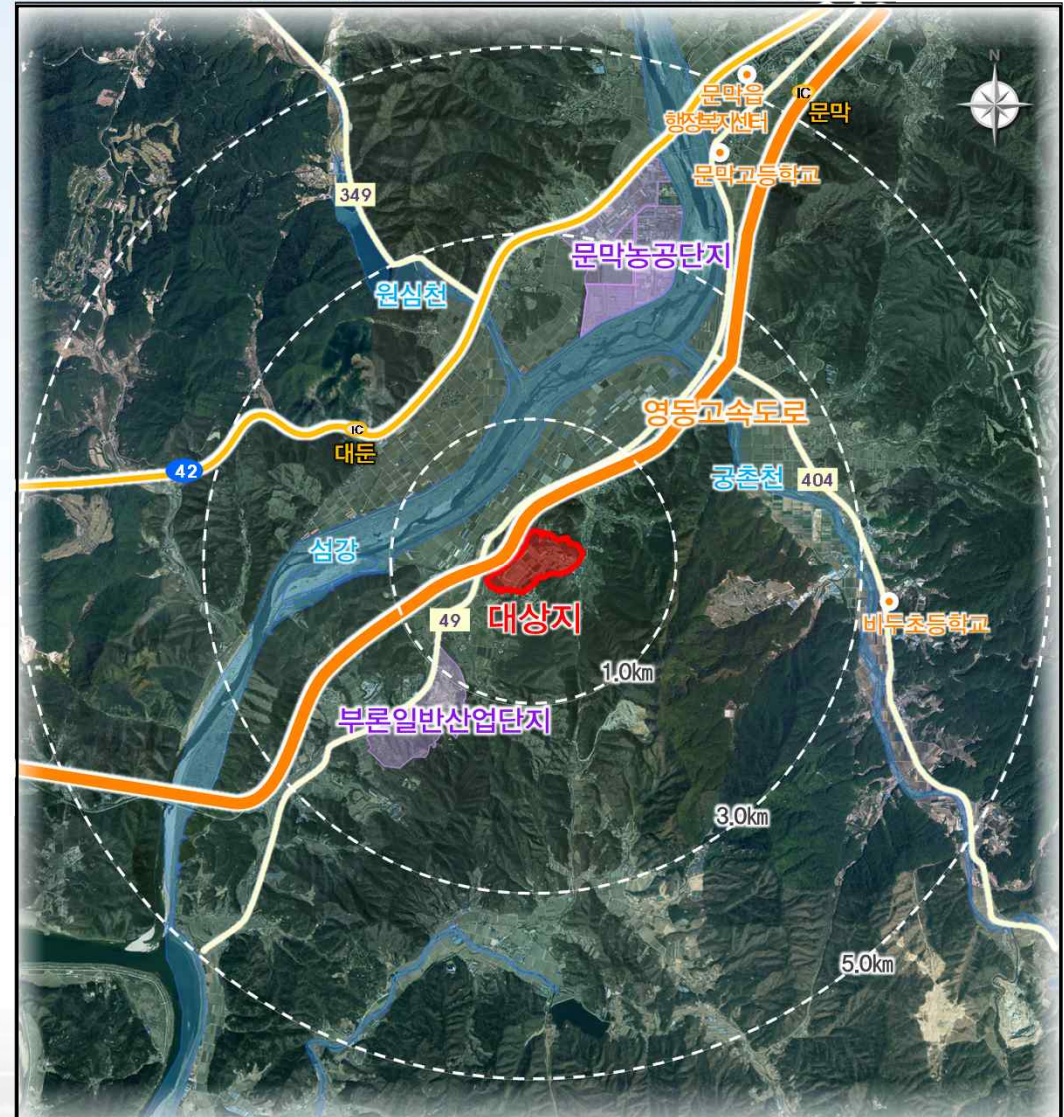
## 2 계획의 주요내용

- 위 치: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882번지 일원 (경동대학교)
- 면 적: 363,899㎡ (전체시설면적) / 519㎡ (파고라 면적)  
(구역 변경없음,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 건축물계획 변경 : 파고라(신설)

## 3 추진경위

- 2025.12.0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5.12.18. ~ 2026.01.07. : 관련부서협의
- 2025.12.19. ~ 2026.01.09. : 주민 열람공고

## 위 치 도



# II. 대상지 여건분석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

## 1 현황사진

### ▶ 항공사진



###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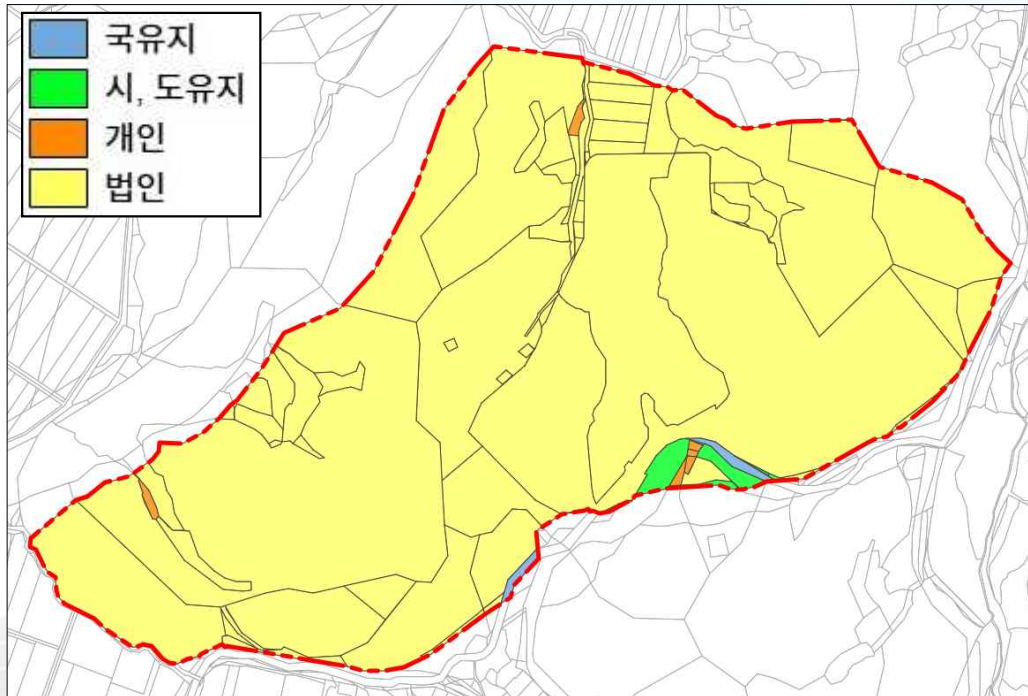


# II. 대상지 여건분석

## 2. 소유·지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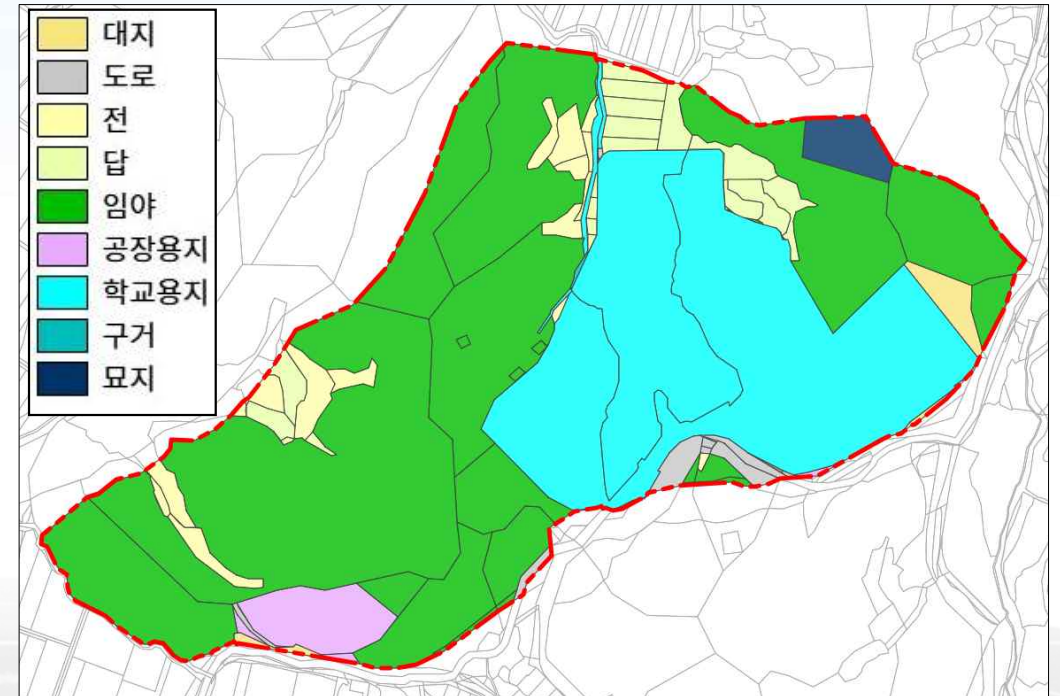
### ▶ 소유자별 현황

구분	면적(㎡)	비율(%)	필지 수
합 계	363,899	100.0	86
국유지	1,496	0.4	2
공유지	2,804	0.8	6
사유지	359,599	98.8	78



### ▶ 지목별 현황

구분	면적(㎡)	비율(%)	필지 수
합계	363,899	100.00	86
학 전	112,729	31.00	5
답	12,225	3.40	17
임	16,462	4.50	19
임야	199,097	54.70	24
대	4,035	1.10	3
장	9,854	2.70	4
도	4,388	1.20	11
기타	5,109	1.40	3



#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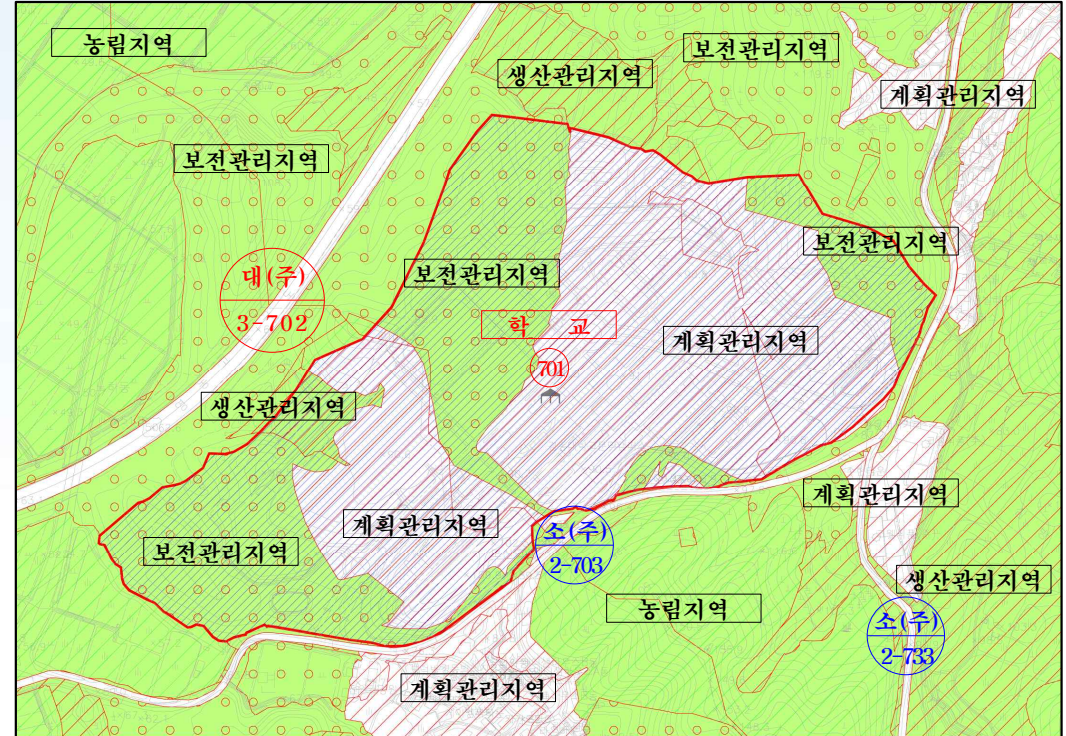
####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3,899	-	363,899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334	-	210,334	57.8
	제2종일반주거지역	8,006	-	8,006	2.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45,560	-	145,560	40.0

#### ■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01	학교	대학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882번 지 일원	363,899	-	363,899	강원도고시 제2007-62호 (2007.04.06)	경동대

### ▶ 도시관리계획도



#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결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총 계			363,899	-	363,899	100.0	
소 계							
교사시설			14,275		14,275	3.92	
기정	1	대학본관(우당관)	9,921		9,921	2.73	
기정	2	강의동2(선덕관)	4,354		4,354	1.20	
소 계			31,690	증) 519	32,209	8.85	
부속시설							
기정	3	복지관(총효관)	6,013		6,013	1.65	
기정	4	어린이집(인성교육원)	3,059		3,059	0.84	
기정	4	기숙사 (A)	14,767		14,767	4.06	
기정	6	기숙사 (B)					
기정	7	기숙사 (C)	4,450		4,450	1.22	
기정	8	기숙사 (D)	3,324		3,324	0.91	
기정	9	정문 및 후문	77		77	0.02	
기정	10	상징탑 1	-		-		
신설	17	파고라	519	증) 519	519	0.14	신설
소 계			18,345		18,345	5.04	
체육시설							
기정	11	운동장	10,756		10,756	2.96	
기정	12	실내체육관	7,589		7,589	2.09	
소 계			263,350	감) 519	262,831	72.23	
기타기반시설							
기정	13	주차장	20,945		20,945	5.76	
변경	14	조경 및 녹지	238,778	감) 519	238,259	65.47	면적변경
기정	15	저류지	3,627		3,627	1.00	
소 계			36,239		36,239	9.96	
도로시설							
기정	16	도로	36,239		36,239	9.96	

### ▶ 토지이용계획도

#### ■ 기정



#### ■ 변경



#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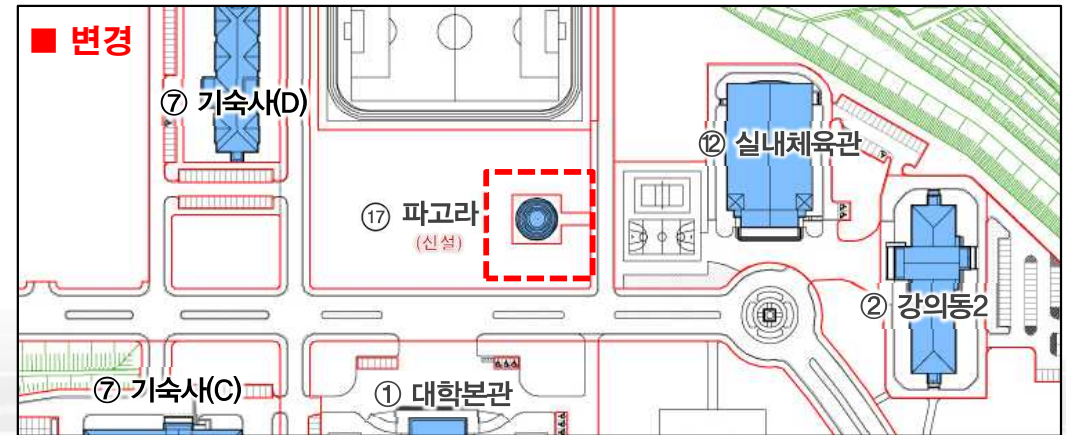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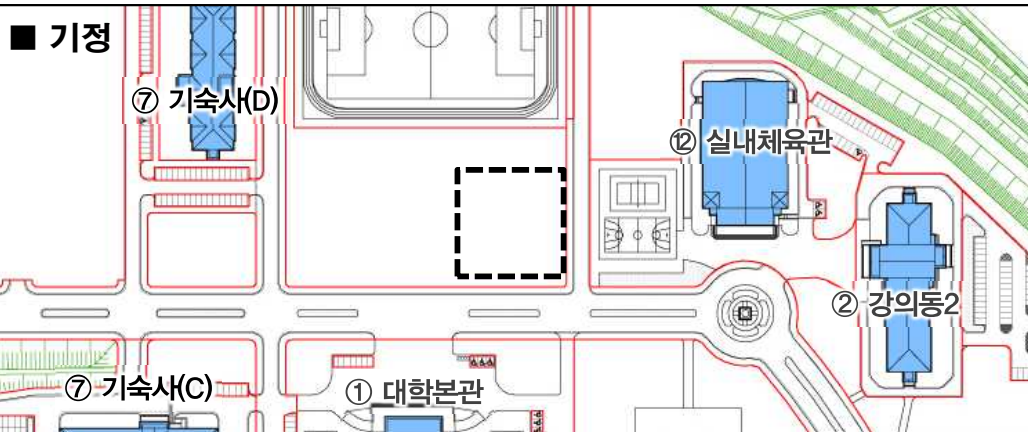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 건축물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5,014.43	증) 38.48	15,052.91	72,559.17	증) 38.48	72,597.65	10층이하	
기정	1	대학본관(우당관)	2,203.72	-	2,203.72	20,305.27	-	20,305.27	1/10	
기정	2	강의동2(선덕관)	1,558.31	-	1,558.31	7,874.15	-	7,874.15	1/6	
기정	3	복지관(충효관)	2,372.75	-	2,372.75	11,572.31	-	11,572.31	1/6	
기정	4	어린이집(인성교육원)	916.03	-	916.03	1,205.84	-	1,205.84	0/2	
기정	5	기숙사(A)	2,216.29	-	2,216.29	11,161.11	-	11,161.11	1/6	
기정	6	기숙사(B)				8,019.73	-	8,019.73		
기정	7	기숙사(C)	1,351.73	-	1,351.73	3,921.62	-	3,921.62	0/5	
기정	8	기숙사(D)	960.87	-	960.87	5,193.34	-	5,193.34	1/6	
기정	9	정문 및 후문	1,250.98	-	1,250.98	-	-	-	0/2	공작물
기정	10	상징탑	-	-	-	-	-	-	-	공작물
기정	12	실내체육관	2,183.75	-	2,183.75	3,305.80	-	3,305.80	1/2	
신설	17	파고라	-	증) 38.48	38.48	-	증) 38.48	38.48		금회신설

### ▶ 건축물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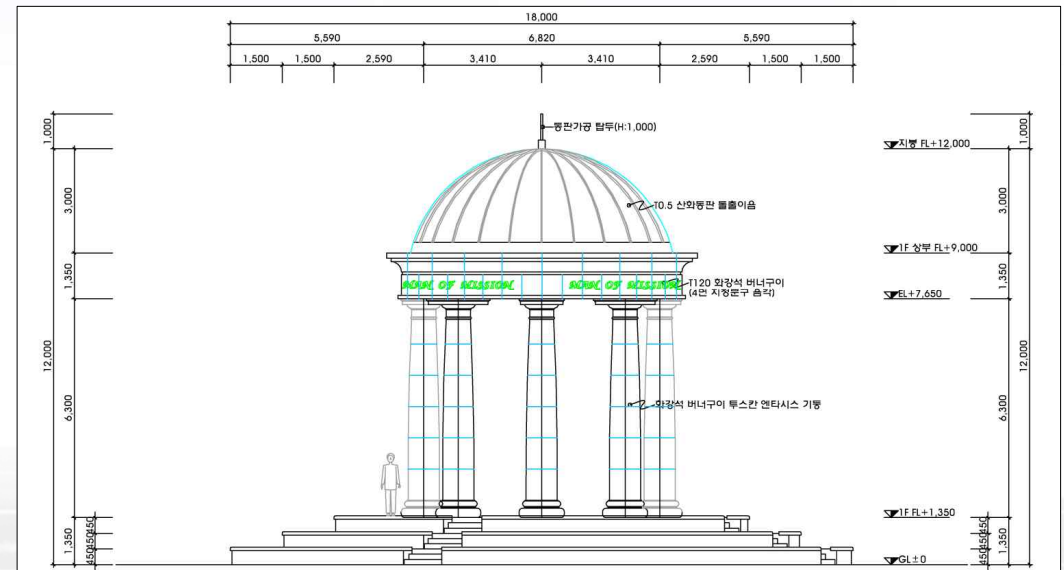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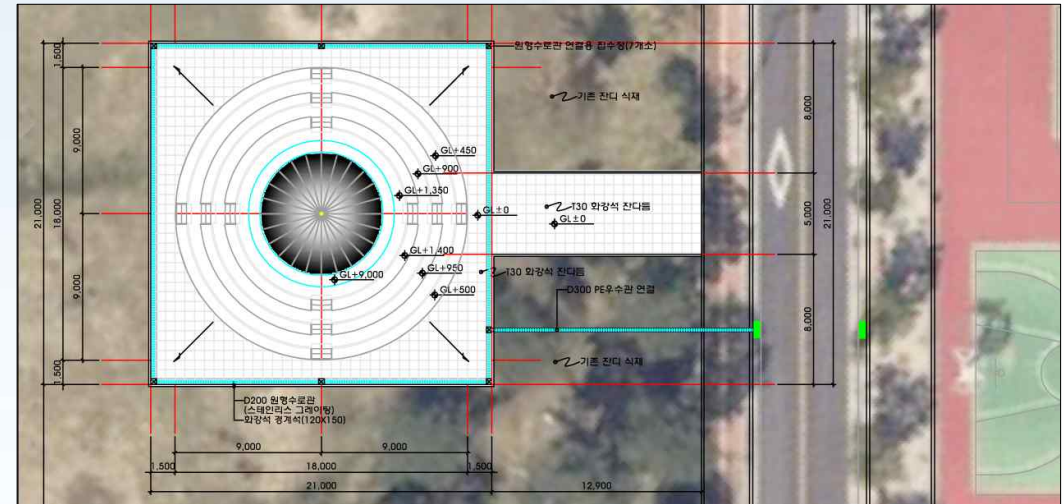
# IV. 참고자료

## 1 건축계획(안)

### ▶ 건축개요

사업명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파고라 신축공사
위치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882번지 일원, 경동대학교 내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용도	파고라(조경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장재	화강석, 산화동판
내부 마감재	석재뿔칠
건축면적	38.48㎡
연면적	38.48㎡
최고높이	13.15m

### ▶ 파고라 배치도 및 입면도



## 2. 조감도



# V. 관련 의견 및 조치 계획

## ▶ 주민 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25. 12. 19. ~ 2026. 01. 09.
- 열람방법 :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 제출의견 : 없음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 계획

- 협의기간 : 2025.12.18. ~ 2026.01.07.
- 협의기관 : 도로관리과 외 13개 부서(기관)
- 협의의견 : 55건 - 반영 29건(금회 4건, 사업시행시 25건), 해당없음 26건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로 관리과	<p>■ 도로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점용: 별도 의견 없음.</li> <li>※ 인접 도로구역(군도13호선) 내 점용사항(공사용 비게 설치 등의 일시점용 및 관로 매설 등을 위한 도로 굴착 포함)이 있을 경우, 사전 도로점용허가 관련 별도 협의 필요.</li> </ul> <p>• 국· 공유재산: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는 원주시(도로관리과) 소관 재산이 있을 경우, 사용허가 및 무상귀속, 용도폐지 관련 요청은 사업 인· 허가 승인 전에 사전협의 요청하여야 함.</p>	<p>-</p> <p>※ 해당없음</p> <p>•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는 원주시(도로관리과) 소관 재산이 있을 경우, 사용허가 및 무상귀속, 용도폐지 관련 사업 인· 허가 승인 전에 사전협의 요청 하겠음</p>	<p>해당없음</p> <p>사업 시행시</p>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로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관리</li> <li>• 별도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조명</li> <li>• 별도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허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li> <li>•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어 검토가 어려우나, 관련법령(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증축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신고, 그 이상은 건축허가 대상입니다.</li> <li>• 또한,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에 의거하여 성토 및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 손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구조 및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법면의 경사도, 옹벽설치, 건물과의 이격거리(대지안의 공지) 확보 등을 하여 대지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고라 신축 시 관련법령(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도록 계획하겠으며, 파고라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나, 기존 학교 건축허가(변경)으로 진행할 예정임</li> <li>• 파고라 신축 시 대지의 안전을 도모하겠음</li> </ul>	<p>사업 시행시</p> <p>사업 시행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허가</li> <li>• 산지전용 받은 필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산지전용 변경협의를 득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산지전용 변경협의를 득하겠음</li> </ul>	사업 시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허가</li> <li>• 해당 사업 부지 내 농지는 기 농지전용협의(농업정책과-17340(2007.10.23.)호.) 되었으며, 원주도시관리계획(대학 701호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 IV. 참고자료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건축과	<b>■ 건축법</b> •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세부 검토가 불가하나, 건축하려는 시설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에 따른 “ 건축물 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향후 파고라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득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	사업 시행시
	<b>■ 기계설비법</b>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없음
	<b>■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b>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없음
환경과	<b>■ 환경영향평가법</b> 1. 해당 지역은 「사업명: 원주도시관리계획(동우대학 문막캠퍼스) 결정(변경), 사업위치: 문막읍 후용리 산58-2 일원, 사업규모: 367,695m <sup>2</sup> , 사업시행자: 학교법인 경동대학교」로 사전환경성검토(2010.07.19.)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 되오니 확인 하시기 바람.(現 전략환경영향평가)	1. 사전환경성검토(2010.07.19.)를 완료하였음	반영
	2. 또한, 해당지역은 「사업명: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조성사업, 사업규모: 367,695m <sup>2</sup> , 사업시행자: 학교법인 경동대학교」로 환경영향평가를(2012.11.14.) 완료한 것으로 판단 되오니 확인 하시기 바람.	2. 환경영향평가를(2012.11.14.) 완료하였음	반영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환경과	3.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같은 법 시행령 28조 및 제21조(변경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여야 함.	3.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아님	반영
	4.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변경협의 경우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승인부서에서는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4.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아님	반영
	5. 다만, 원주 도시관리계획(대학701호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은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내 파고라 신축공사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세부시설 변경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별도 의견 없음.	5. 해당없음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li> <li>•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법</li> <li>• 발생오수가 없을 경우 의견없음.</li> </ul>	-	해당없음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자연 순환과	<p>■ 사업장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p> <p>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임</p> <p>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p> <p>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p> <p>다.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p> <p>2.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이행</p> <p>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p> <p>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단,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하되,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p>	<p>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할 경우 배출자 신고하겠음</p> <p>2.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이행</p> <p>가. 폐기물 발생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겠음</p> <p>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겠음</p>	<p>사업 시행시</p> <p>사업 시행시</p> <p>사업 시행시</p>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준공 후 15일 이내(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3. 향후 폐기물 처리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하겠음	사업 시행시
자연 순환과	<p>■ 건설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p> 1.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해당 문막읍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에 맞게 처리하겠음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시
	가. 반드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고 처리 업종에 맞는 폐기물처리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나.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할 것 다. 발생 된 건설폐기물은 가능한 바로 처리할 것  라. 건설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 할 것 등	가. 반드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고 처리 업종에 맞는 폐기물처리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겠음 나.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겠음 다. 발생 된 건설폐기물은 가능한 바로 처리하겠음  라. 건설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않겠음.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시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자연 순환과	<p>2. 건설폐기물의 인계·수 이행</p> <p>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p> <p>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함</p>	<p>2. 건설폐기물의 인계·수 이행</p> <p>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겠으며,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하겠음</p> <p>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할 경우 3년간 보관하겠음</p>	<p>사업 시행시</p> <p>사업 시행시</p>
	<p>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준공 후 15일 이내(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p> <p>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lt;공공기관 발주 공사만!&gt;</p>	<p>3.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할 경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준공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겠음</p> <p>4.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p>	<p>사업 시행시</p> <p>해당없음</p>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자연 순환과	<p>■ 순환골재에 관한 사항</p> <p>1.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2호)」에 따라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람.</p> <p>가. 도로공사용</p> <p>나. 건설공사용(성·복토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p> <p>다.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p> <p>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 포함] 제조용</p> <p>마. 매립시설의 복토용</p> <p>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p> <p>사.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p> <p>아.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p> <p>※ 단,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아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함.</p> <p>가. 도로공사용</p> <p>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 포함] 제조용</p>	<p>1.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2호)」에 따라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하겠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겠음</p>	<p>사업 시행시</p>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자연 순환과	<p>2. 순환골재를 사용한 건설공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p> <p>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동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환경부·국토교통부 고시 사용량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또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자는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착공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lt;공공기관 발주 공사만!&gt;</p>	<p>2.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겠음</p> <p>3.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p>	<p>사업 시행시</p> <p>해당없음</p>
	<p>■ 지정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페페인트, 페래커, 폐유, 폐산 등)을 배출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맞게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페페인트, 페래커, 폐유, 폐산 등)을 배출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맞게 보관 및 배출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겠음</li> </ul>	<p>사업 시행시</p>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자연 순환과	<p>■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별표3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li> <li>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li> </ol> </li> <li>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대하여 아래에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li> <li>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li> <li>아래에 사항에 해당시 이행하겠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겠음</li> </ol> </li> </ul>	<p>사업 시행시</p> <p>사업 시행시</p> <p>사업 시행시</p>

# IV. 참고자료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자연 순환과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지도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겠음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겠음 4) 해당없음 5) 해당없음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시
건설과	■ 건설행정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없음
	■ 도로시설 도시계획도로 관련 • 별도 의견 없음.	-	해당없음
	■ 지역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없음

##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계속)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안전 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li> <li>• 의견 없음(검토결과: 가)</li> </ul>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li> <li>• 의견 없음(검토결과: 가)</li> </ul>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li> <li>• 의견 없음(검토결과: 가)</li> </ul>	-	해당없음
공원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교통행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기업지원 일자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정보 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기술기준</li> <li>•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상하수도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문막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부론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 없음</li> </ul>	-	해당없음

**감사합니다**